

의안번호	제 151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371 회)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발 의 자	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
----------	-----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발 의 자 : 이옥규, 전원표, 허창원,  
연철흙, 송미애, 정상교,  
오영탁

##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정함(안 제7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동주택관리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라. 입법예고 : 2019. 2. 7. ~ 2019. 2. 17.(10일간)

##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 홍보

2. 층간소음에 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 가. 관리위원회
  - 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비용발생요인

- 층간소음 예방 위탁 교육비(예방교육), 층간소음 관련 의식 개선 및 확산 사업비(홍보물 제작 및 저감용품 지원 등), 층간소음 측정기계 구입비 등

## 3. 관련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4. 비용 추계결과

- 층간소음 방지 교육 사업비 : 10,000천원
- 층간소음 관련 의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가. 추계의 전제

- 세출 : 연간 예산에 매년 5% 상승률 반영

### 나. 추계 결과

- 세출 : 2019년 ~ 2023년 5개년 : 71,833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확보

## ○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장 변 상 천